

(參 照)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

연번	안 건 명	소 관 부 서	소관위원회
1	○ 성남시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(안)	문화체육담당관실	기획총무위원회
2	○ 성남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(안)	총 무 과	"
3	○ 성남시시세조례 중 개정 조례(안)	세 정 과	"
4	○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(안)	환 경 위 생 과	사회경제위원회
5	○ 성남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(안)	업 무 과	도시건설위원회
6	○ 성남시제1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 폐지 조례(안)	업 무 과	"
7	○ 성남시제2회상수도사업공채조례 폐지 조례(안)	업 무 과	"

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비 고
1	성남시문화의집 설치및운영조례 (안)	☐ 제안이유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개개인의 문화감수성을 증대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문화의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함. ☐ 주요골자 ○ 문화의집에 문화관람, 시청각, 문화교실, 문화창작, 생활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기능의 시설 설치 (안 제3조) ○ 문화의 집 수탁자의 자격기준을 문화예술 사업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제한함. (안 제5조) ○ 문화의집 운영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12명 이내로 구성(안 제6조)	문 화 체 육 담 당 관 실	기획총무
2	성남시통합방위 협의회구성및운 영등에관한조례 (안)	☐ 제안이유 통합방위법이 제정('97. 1. 13 법률 제5264호) 시행됨에 따라 성남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성남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. ☐ 주요골자 ○ 성남시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규정 (안 제2조) ○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 (안 제3조) ○ 통합방위협의회의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 (안 제4조) ○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, 조직 및 운영과 사무를 규정 함 (안 제5, 6조)	총 무 과	기획총무

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비 고
3	성남시시세조례 중개정조례(안)	☐ 제안이유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1조에서 균등할 주민세 개인의 세율이 10,000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고자 함. ☐ 주요골자 ○현행 균등할 주민세 개인의 세율을 3,000원 에서 4,000원으로 조정 (안 제15조)	세 정 과	기획총무
4	성남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(안)	☐ 제안이유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신고수수료 근거규정인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대체입법됨 에 따라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○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[별표1] 제증명수수료요율표 중 공중위생관 리법에 근거가 없는 공중위생업소 신고수수료 규정 삭제 (안 제3조 별표1)	환경위생과	사회경제
5	성남시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 (안)	☐ 제안이유 수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내용의 정비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폐지 ☐ 주요골자 ○다량의 급수사용 및 고층건물의 급수정 및 가압장치등 설치 의무규정(제14조) 삭제	업 무 과	도시건설

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비 고
6	성남시제1회상 수도사업공채조 례폐지조례(안)	○ 지하수의 취수제한 규정(제15조) 삭제 ○ 사설소화전의 연습사용 사전신고 규정(제21조제2항) 삭제 ○ 급수의 중지기간을 3월에서 5월로 조정 (안 제21조) ○ 수도계량기 시험결과 사용공차범위 초과시 시장의 부담 신설 (안 제28조) ☐ 제안이유 '77년 발행한 상수도공채 상환의 종료('92년) 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 ☐ 주요골자 ○ 동 조례 폐지	업 무 과	도시건설
7	성남시제2회상 수도사업공채조 례폐지조례(안)	☐ 제안이유 '78년 발행한 상수도공채 상환의 종료('93년) 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 ☐ 주요골자 ○ 동 조례 폐지	업 무 과	도시건설